

[별지 제37호서식]

검 사 원 증	
() 세무서	
직 명	
성 명	
생년월일	
위의 사람은 영업세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물건을 검사할 권한이 부여 되었음을 증명함.	
년	월
	일
	국 세 청 장 <input type="checkbox"/>
	지방국세청장 <input type="checkbox"/>
	세 무 서 장 <input type="checkbox"/>

3004-8-43A
1969.10.30 승인

90mm×60mm
(백상지 120g/m²)